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6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3. 1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3. 11
- 라. 상정일자 : 2003. 3. 18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가. 개정이유

- 시·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인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 6. 30까지 연장승인 되고
-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2. 28로 경과되어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 2003. 8. 31까지 기한이 연장 협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군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코자 부칙 조항을 개정코자함.
-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 8.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코자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시·군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인 전산직의 존속기간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된 사항과
 - '98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의 경과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연장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협의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은 2003. 1. 1과 2003. 3. 1일부터 각각 소급적용 하려는 입법사례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상의 형평성 유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내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03. . (제 회)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년 3월 11 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년월일 : 2003. 3 . 11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 시·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인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 6. 30까지 연장승인 되고
-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해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2. 28로 도래하였으나,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결과 2003. 8. 31까지 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군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안 조례 제365호 부칙 제2항)
-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 8.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 개정(안 조례 제305호 부칙 제3조 제2항)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4조
 - 충청남도 행정 12200-3102(2002. 12. 13)
 - 시·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 충청남도 행정 12200-400(2003. 2. 17)
 - 정원 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 통보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조례 제36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 1명의 존속기간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조례 제305호는 2003년 3월1일부터, 조례 제365호는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305호)</p> <p>제1조~ 제2조 (생략)</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생략)</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2003년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 <p>제4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 365호)</p> <p>①(생략)</p> <p><u>②(유효기간)이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1명은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305호)</p> <p>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현행과 같음)</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 <p>제4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 365호)</p> <p>①(현행과 같음)</p> <p><u>②(유효기간)이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1명은 존속기간은 2004년6월30일까지로한다.</u></p>